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39회 제1차 정례회 (2020. 6.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국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0-55
- 나. 제 출 자: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0년 5월 22일(금)
- 라. 회부일자: 2020년 5월 26일(화)

2. 제출사유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하여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우리 구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 자치법규의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 (안 제1조)
 - 제1조 중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으로 변경
- 나.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입법예고 예외 사항 반영 (안 제5조)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행정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

4. 관련법령

- 가. 「법제업무규정」 제1조
- 나.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5. 참고사항

- 가. 입법예고: 2019. 11. 21. ~ 11. 28. (제출된 의견 없음)
- 나.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해당 없음
- 다.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해당 없음
- 라.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 마.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없음
- 바. 제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0.3.24.)

6. 검토의견

- 본 안건은 2020년 5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됨.
- 본 개정 조례안은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함은 물론, 입법예고 예외 사항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임.
- 개정안 제1조(목적)에서는 동 조례의 근거법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같은 규정 인용 조문을 ‘제20조제2항’에서 ‘제20조제4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규정 내용은 기존과 변동이 없음.
- 개정안 제5조(입법예고 대상)은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행정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동 조례의 근거법령에 합당하게 개정하는 것이며 명확한 조문 정비로 그 뜻을 보다 분명하게 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임.

※ 참고자료: 관계 법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 2019. 11. 14.] [대통령령 제30045호, 2019. 8. 13., 일부개정]

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공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20.>

③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의 처리 및 그 처리 결과 등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 10. 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0.>

[전문개정 2010. 10. 5.]

「행정절차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78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삭제 <2002. 12. 30.>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④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22.>

⑤ 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0. 22.>